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 콘크리트공이 회사와 계약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재되어 상병명 “1)좌측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 신경마비, 2)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요양을 신청한 경우

(89-100호 89. 4. 17.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주소 : 경남 진주시 호탄동

원처분청 :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소속 콘크리트공으로 1988. 12. 13. 차량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고 상병명 “골절, 개방성, 분쇄, 좌측경골 비골 및 비골 신경마비, 골절 개방분쇄, 우측 경골 비골”로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주)○○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청구인의 운전행위는 사적행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이 운행한 경남 ○나 6034호 차량의 실소유자는 구조물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며 청구인은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단지 위 차량 고정 운전기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교체운전기사를 채용할 때까지 임시로 운전을 하다가 피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89. 3. 6. 이○○)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3.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2. 4. 홍○○)
 4. 요양신청서 사본 (1988. 12. 20. 이○○)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 (1988. 1. 5. 안○○)
 6. 문답서 사본 (1988. 12. 27. 주○○, 정○○)
 7. 문답서 사본 (1989. 1. 5. 이○○)
 8.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본
(1988. 12. 24. 진주경찰서)
 9. 자동차 등록증 사본 (1988. 진주시장)
 10.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988. 12. 28. 이○○)
 11. 확인서 사본 (1989. 1. 마○○)
 12. 기 타
-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재해가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소속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주)○○간에 차량임대 및 운행비로 650,000원을 수령기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청구인 소유차량 경남 ○라 6034호를 증식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 5명을 탑승시키고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재되었는바,

첫째 : 차량임대 및 운행책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차량의 실소유자는 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의 문답내용에 청구인 자신이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진주시장발행 자동차 등록증상 차량소유자 이○○으로 청구인이 소유자임이 입증되고 있어 계약이행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확하게 인정된다.

둘째 : 1989년 11월분 차량 임대료 및 운행비 650,000원을 청구인이 (주)○○으로 부터 수령하였음이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입금표로 확인되고 차량 운전기사를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여 월급 300,000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운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운전기사가 갑자기 그만 됨으로써 차량운행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계약이행 책임자의 입장에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조선(주) 용접공이 점심시간에 족구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부, 측부 인대 및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경우

(89-213호 89. 6. 19.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경남 울산시 남구 야음1동

원처분청 :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조선(주)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3. 10.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선(주)소속 근로자로서 1989. 2. 15. 12:40경 족구시합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부, 측부인대 및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되자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3에 의거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회사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체력을 단련하여 왔는바 회사소유의 공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

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및 이유서

(1989. 5. 29. 김○○)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5. 31.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1989. 5. 23. 오○○)

4. 소견서 사본(윤○○ 정형외과 의원장)

5. 문답서 사본(1989. 3. 6. 김○○)

6. 재해조사 복명서(1989. 3. 7. 행정서기 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청구인은 ○○조선(주)소속 용접공으로서 1989. 2. 15. 12:40경 족구시합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부측부, 인대 및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여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점심시간중 족구경기를 하다가 피재되었는바 운동경기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본건의 경우 동료 근로자의 문답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운동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에 자의로 운동경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휴식시간은 자유시간으로서 자유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자유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